

#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4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10. 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2008. 7월부터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구분하여 통합고지 및 보험료율 인상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보험료 지원대상 용어 변경(안 제3조제7호)

- 1)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  
· 징수됨에 따라 “국민건강보험료”의 용어를 “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 
장기요양보험료(이하 ”보험료“라 한다)”로 한다.

### 나. 지원기준 확대 등(안 제4조제1항제2호 개정, 제4조제2항 신설)

- 1)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부과로 전반적인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 
기존 수혜(10,000원 미만)를 받던 가구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차액분  
지원에 따른 지원기준 확대
- 2) 보험료율 상승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틈새계층에게 탄력적으로  
지원할 수 있는 조항 신설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근거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

- 1) 관계법령 : 6쪽

### 나. 예산조치 : 2008년도 당초예산 확보

### 다. 기타

- 1) 입법예고(2008.08.06 ~ 08.26) : 특이사항 없음

##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7호중 “국민건강보험료”를 “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(이하 “보험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 조목중 “선정기준 등”을 “선정기준 및 공고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보험료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 중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.

가.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자
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

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·부자 가구

라. 조손가구

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매년 보험료 지원계획을 인터넷, 시보,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,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, 지원금액, 지원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지원종류, 지원내용, 지원기간은 별표와 같이 하고, 지원시기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. 다만, 보험료는 납부마감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.

별표중 지원종류중 “건강보험료”를 “보험료”로 하고, 지원내용중 “최대 월 1만원을 지원”을 “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함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중 보험료 지원대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대상)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7. <u>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</u></p> <p>8. (생 략)</p> <p>제4조(선정기준 등) ①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의 자로서,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0,000 원 미만 가구로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자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9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, 「모·부자복지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·부자 가정, 조손가구로 한다.</u></p> <p>② <u>지원종류, 지원내용, 지원기간은 별표와 같다.</u></p> <p>③ <u>지원시기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. 다만, 국민건강보험료는 납부마감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.</u></p>	<p>제3조(지원대상)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(이하 “보험료” 라 한다)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선정기준 및 공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보험료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중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가. <u>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자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나. <u>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다. <u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·부자 가구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라. <u>조손가구</u></p> <p>② <u>시장은 매년 보험료 지원계획을 인터넷, 시보,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,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, 지원금액, 지원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지원종류, 지원내용, 지원기간은 별표와 같이 하고, 지원시기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. 다만, 보험료는 납부마감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.</u></p>

[ 별 표 ]

##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종류 등

현 행				개 정 안			
[ 별 표 ]				[ 별 표 ]			
지원 종류	지 원 내 용	기 간	비 고	지원 종류	지 원 내 용	기 간	비 고
생계비	○ 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○ <b>최저생계비 수준</b> (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기준)	1개월 시장의 결정으로 1월간연장 가능		생계비	○ 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○ <b>최저생계비 수준</b> (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기준)	1개월 시장의 결정으로 1월간연장 가능	
의료비	○ 각종 검사 및 치료비 등 ○ <b>300만원 이내</b> (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)	하며, 긴급지원 심의위원 회의결정 으로2월간 연장 가능(의료 비제외)		의료비	○ 각종 검사 및 치료비 등 ○ <b>300만원 이내</b> (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)	하며, 긴급지원 심의위원 회의결정 으로2월간 연장 가능(의료 비제외)	
주거비	○ 임시거소 마련 또는 <b>최저 주거비 지원</b> (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기준)	으로2월간 연장 가능(의료 비제외)		주거비	○ 임시거소 마련 또는 <b>최저 주거비 지원</b> (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기준)	으로2월간 연장 가능(의료 비제외)	
난방 (연료)비	○ 월 <b>6만원</b> 범위안에서 현물지원	3개월		난방 (연료)비	○ 월 <b>6만원</b> 범위안에서 현물지원	3개월	
<b>건강 보험료</b>	○ <b>최대 월 1만원 지원</b>	연 중		<b>보험료</b>	○ <b>제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함.</b>	연 중	
공공요금	○ <b>50만원</b>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(대체납부 가능)	1회	전기· 수도·가스 사용료 채납액	공공요금	○ <b>50만원</b>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(대체납부 가능)	1회	전기· 수도·가스 사용료 채납액
해산및 장제비	○ 1인당 <b>50만원</b> ※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※ 해산비의 경우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0천원 추가지급	1회		해산및 장제비	○ 1인당 <b>50만원</b> ※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※ 해산비의 경우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0천원 추가지급	1회	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장애인복지법

제32조 (장애인 등록) ①장애인,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(이하 "등록증"이라 한다)을 내주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.

③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
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(사정)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,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장애인의 등록,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, 장애 진단 및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>

### □ 한부모가족지원법(모·부자 복지법)

제4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08.2.29>

① "모" 또는 "부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

나.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

다. 미혼자(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)

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

② "한부모가족"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.

③ "모자가족"이란 모가 세대주(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)인 가족을 말한다.

④ "부자가족"이란 부가 세대주(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)인 가족을 말한다.

⑤ "아동"이란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)의 자를 말한다.

⑥ "보호기관"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
⑦ "한부모가족복지단체"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 [전문개정 2007.10.17]

#### □ 재산기준

대도시 수급권자 가구 기초공제액의 2.5배

지역 금액(만원)	대도시	중소도시	농어촌
기초공제액	3,800	3,100	2,900
기초공제액의 2.5배	9,500	7,750	7,250